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7 2019년 2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19년 2월 1일

다. 회부일: 2019년 2월 7일

라. 상 정 일 :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하철승)

가. 제안이유

- 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정보원 제2국장"과 "서울지구기무부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수정(안 제3조제 3항)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8.11.1. ~ 11.21.)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안보정책 자문과 대외협력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자문기관인 '안보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가. 안보정책자문단 설치(안 제11조 신설)

- 비상기획관은 2014년 12월부터 시장방침¹⁾에 따라 자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해당 자문기관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로써 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 왔는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본 자문단을 두도록 규정하여, 그 취지 상 자문단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의 성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합방위협의회와 자문단의 위원 구성이 서로 상이한바, 각각 별개의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임.

¹⁾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31호,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계획(안) 민방위 담당관-17720(2014.12.4.)

-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쪽,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됨.
- 신규 위원회로서의 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 제11조의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본 개정안에는 일몰제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본 자문단이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둘째,「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규정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현 자문단(2기)의 위원 16명 전원이 영관급 이상 군 출신자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비록 여성정책담당관 으로부터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안동의²)를 받았다고는 하나, 향후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2019년부터 운영되는 제3기 위원 구성안에는 여성 1인 위촉 예정(육군 준장 출신).

^{2)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8892(2018.12.31.))

「양성평등기본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 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 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셋째,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자문단 위촉 위원의 자격으로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단 구성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2기) 위원은 모두 영관급 이상 군 출신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가안보 전문가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공개적 절차에 의한 위원의 위촉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2019년부터 운영되는 제3기 위원 구성안에는 여성 1인(육군 준장 출신) 위촉 예정.
- ※ (참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관하여는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였다고 하나, 자문단은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의 별도 위원회로서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을 추가(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할 수 있다고할 것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u>위원구성은 공모제나</u>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2017.12.15. 서울협치위원회) 하나,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등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위원 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 하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세대별·지역별 등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안 6조. 안 7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할 사항 중 본 조례에서 누락되어 온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설치 시 고려사항 중 필수규정 명시 여부(14쪽)
- 1.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착·기피·회피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4. 위원회 존속 기한(5년이내 범위로 명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 ①항 및 ②항,「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만, 안 제7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법령에서 예시한 당연직 위원 외의,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에 한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당연직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 집행부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위촉 등 사항은 「통합방위법」등 상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들어 해당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을 제한함으로써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본 조례 제3조 제3항 제17호에서의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통합방위법」에서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원을 예시하면서, 예시 외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바.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안을 서울특별시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에 한하도록 의장의 권한을 제한 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 ※ 안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호 내지 13호는 해당 지역의 군부대장 등 당연직 위원 예시 사항임)
-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 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직위 및 자구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시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개정조례안 정비 사항>

《게영꼬네한 경비 사왕》			
조문	현 행	개정안	비고
1조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데	띄어쓰기(알법)
3조 본문	호에 정한 자로	호에 정한 사람으로	일본식 문구 정비(알법)
3조 2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자 수정
3조 6호	국가정보원 제2국장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잦은 기관 직제 변경에 따른 포괄적 규정
3조 8,9,10호	서울시	서울특별시	정식 기관명 사용
3조 15호	서울지구기무부대장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명칭 변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정)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7

제출년월일: 2019년 2월 1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나.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정보원 제2국장"과 "서울지구기무부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수정(안 제3조제3항)
-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 ·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마.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 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11.1. ~ 11.2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하는데"를 "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정한 자로"를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제3조제3항제2호 중 "서을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서울시"를 각각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안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1.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
 - 2.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 3.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자문단의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자문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안 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혅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 제1조(목적) -----법 1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 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영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정한 자로 한다. 서 정한 사람으로 --.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서을특별시 교육감 2. 서울특별시 교육감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무를 소관하는 국장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8. 서울특별시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9. 서울특별시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0. 서울특별<u>시</u> ----11. ~ 14. (생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5.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16. · 17. (생략) 16. · 1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협의회 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현 행	개 정 안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u>.</u>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
	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u>고 인정되는 경우</u>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
	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u>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u>
	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u>제6조</u> (생 략)	<u>제10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 <신 설></u>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제3조
	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
	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u>다.</u>
<u>제7조</u> (생 략)	<u>제9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u><신 설></u>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협
	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현 행	개 정 안
	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
	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
	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u>있다.</u>
	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
	<u>우</u>
	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u>하는 경우</u>
	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u>제9조</u> ~ <u>제13조</u> (생 략)	<u>제12조</u> ~ <u>제16조</u>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가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안보정책팀 박종필 (2133-4528)